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5549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의자 : 안도걸 · 정준호 · 임호선
전용기 · 정태호 · 이용선
조계원 · 복기왕 · 정진욱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「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」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.

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·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·재정·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,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5548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

률안」(의안번호 제155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
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
할 것임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“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”를 “한국방송공사 사장,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의 후보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략)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 | 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|
| 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 국세청장, 검찰총장, 경찰청장, 합동참모의장, 한국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, <u>한국방송공사 사장</u> 또는 <u>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</u> 의 후보자 | 1. ----- |
| 2. · 3. (생략) | 2. · 3. (현행과 같음) |

③ ~ ⑥ (생략)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